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불용결정

1. 관련근거

가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(불용의 결정), 동법시행령 제76조(불용 결정)

나.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(물품소요조회와 불용결정)

2. 위 관련근거에 의거 사용 물품 중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및 훼손 등에 의한 사용이 불가능한 비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고자 합니다.

붙 임 1. 불용물품 보고서 1부
2. 관련근거 1부. 끝.

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이사장

담당 박소연

사무국장

전결2/27
송연숙

협조자

시행 서울장학재단-123 (2018. 2. 27) 접수 ()

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, 304(운니동,가든타워) / <http://www.hissf.or.kr>전화 070-8667-3506 /전송 070-4133-2258 / soy0503@hissf.or.kr / 부분공개(5)